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정보 유형에 소란행위 정보 추가 및 벌칙 규정 신설〉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37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정보 유형에 소란행위 정보 추가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석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6.

다. 회 부 일 : 2026.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범죄 교사·방조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그러한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내용의 영상을 유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불법정보 유형에 소란행위 정보 추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영상으로서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영상으로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죄를 지은 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2).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현행	개정안
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 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의2. (생략) <u><신설></u>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u>2의3.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 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 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u>
3.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을 위반하여 공공장소에서 주 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 를 하는 영상을 유통한 자</u>
4. ~ 7. (생략) ② (생략)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추징) -----

현행	개정안
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 제73조제7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의----- ----- ----- ----- ----- ----- -----.----- -----.
※ 부칙 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및 영상 제작자들이 특정 지역의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영상을 유통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바 있음.¹⁾
- 현행법 제44조의7에서는 제1항 각 호에서 불법정보의 유형을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들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²⁾, 이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1) 임희재·이호준 기자, ‘부천역 단속하자 부평·송내로… 막장 유튜버 무대 옮겼다’, ChosunBiz, 2025.11.18.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신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³⁾

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개정안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제3조제1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⁴⁾에 해당하는 경범죄 행위이며, 이러한 소란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는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불법정보로서 유통이 금지되고 유통시 방미통위의 조치명령 등 규제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

4)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혐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불법정보의 유형을 규정한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의 규율체계를 살펴보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는 구체적인 불법정보의 유형을 열거하고 제9호에서는 그 외의 법률 위반 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특히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열거하고 있는 불법정보 유형은 음란물(제1호), 명예훼손 정보(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제5호) 등과 같이 정보 유통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전적인 정보 유통 차단이 필요성이 높은 정보들인바, 소란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이러한 불법정보 유형과 같이 별개의 유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은 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유통한 자에 대한 범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인 것과 비교할 때 소란행위 영상 유통행위에 대하여 현저히 중한 형벌을 부과할 정도로 추가적인 법익 침해나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넷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6년 7월 7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 발의 당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었던 법

를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⁵⁾의 시행일인 2026년 7월 7일과 일치시키려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해당 시행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중검토

- 현행법에 따른 유통 제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불법정보로 새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규율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 최소화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중검토

- 「경범죄 처벌법」에서 공공장소 소란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처벌의 비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소란행위 관련 정보를 도박, 마약 관련 불법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여 유형화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시행 2026. 7. 7.)

3)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 우려가 있고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 방지는 경찰 당국의 역할인데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228